

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150
발의일자 및 발의자	2018년 3월 29일, 김종찬 의원 등 24명
상정일자	제32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(2018년 4월 10일 상정 및 심의, 의결)
심사결과	원안가결
주요내용	•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도시자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 • 도지사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 •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. • 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. •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.

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

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8년 4월 10일
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3월 29일, 김종찬 의원 등 24명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2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
(2018년 4월 10일 상정 및 심의,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종찬 의원)

가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,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나. 도지사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도지사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도지사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- 마. 도지사가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를 설치·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.

3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: 남상중)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 경기도 내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동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별첨1]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※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[별첨2]

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상중

1. 제안자 및 경위

-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종찬 의원 등 24명이 2018년 3월 29일 발의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 및 절차이행 등

-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.
-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(2018. 3. 19. ~ 3. 26.)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.

3.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

가. 관련 입법동향
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-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쉼터를 명시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32조의2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-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에서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(2016.3.10.)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.

<가출청소년 지원 관련 자치법규 현황>

번호	지자체명	자치법규명	최초 제정일
1	경상남도	경상남도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	2016.3.10.
2	대구광역시 달서구	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	1999.12.01
3	충청북도 청주시	청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	2014.7.1
4	경기도 여주시	여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	2016.3.18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-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목적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 여성가족부의 ‘2016 청소년백서’에서 최근 가출한 청소년들이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·폭행·성매매 등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, 청소년들의 가출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된 점 등을 고려할 때, 경기도가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는 긍정적인.

- ※ 청소년의 가출경험률은 2002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2010년 13.7%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이후, 2014년에는 11%로 생애 가출경험률이 비교적 낮아지고는 있으나, 비행·가출·학교부적응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인 특수집단의 가출경험률의 경우 60~70% 수준으로 일반청소년의 가출경험률과 큰 격차가 있음.

<청소년 생애가출 경험률>

(단위 : 년, %)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
일반집단*	10.9	12.1	12.8	11.6	13.7	10.2	12.2	-	11
특수집단**	67.1	59.2	73.8	72.6	73	-	72.8	-	69.3

* 일반집단 : 전국 중·고교 재학중인 청소년,

**특수집단 : 전국의 소년원, 가출·학교부적응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

출처 : e-나라지표(통계청),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 실태조사(여성가족부), 경기도 가출청소년의 지지체계 실태 및 지원방안(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)

- ※ 2016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‘경기도 가출청소년의 지지체계 실태 및 지원방안’을 통해 도 내 청소년들의 생애 가출경험의 비율(11%)을 근거로 하여 경기도 총 2,469,497명의 청소년 중 약 9만 명 이상이 가출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산함.

○ **안 제3조**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, 이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는 없음.

- 다만, 안 제3조 중 “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「경기도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(2016.6.7.제정)」를 통해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, 본 조례안 제4조에서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한 바, “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”에 관하여는 현 「경기도 아동·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따라야 할 것임.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[시행 2017.6.21.] [법률 제14447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·운영,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(이하 "청소년단체"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**안 제5조**는 안 제3조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및 안 제6조에 따른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이행과 추진을 위해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.

- 안 제6조는 청소년 가출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·시설 및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4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,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가 청소년의 가출 예방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가정·사회로의 복귀에 필요한 지원내용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문은 문제가 없음.
- 안 제7조제1항은 도지사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같은 조 안 제2항은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고, 같은 법 제42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문은 문제가 없음.

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[시행 2017.6.21.] [법률 제14447호, 2016.12.20., 일부개정]

제32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·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·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예산의 보조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,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3.5.28.]

- 안 제8조는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, 현재 청소년쉼터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지원기관이 부재하고, 다수의 쉼터가 민간위탁 혹은 개인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성과 효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가 지역사회 내 쉼터 간의 서비스 연계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의 정책이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임¹⁾을 고려할 때,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문은 문제가 없음.

※ 청소년쉼터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, 전국 124개소의 청소년쉼터 중 경기도는 약 23.6%인 29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(2017년 10월 기준). 이는 전국 광역단위로는 가장 큰 비율임.
--- [붙임 1] 참조

※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를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다.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 의견

-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의견 없음.
-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 의견이 반영되어 별도의 제출의견은 없음.
-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임.

1)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(2014),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

라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 경기도내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동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붙임 1
청소년 쉼터 현황

□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표(2017. 10 기준)

구 분	계	쉼터현황					
		일시 (30)		단기 (53)		중장기 (40)	
		고정형	이동형	남	여	남	여
계	124	20	10	28	25	18	22
서울	15	3	4	3	2	1	2
부산	6	1	1	1	1	1	1
대구	6	1	1	1	1	1	1
인천	8	2	-	2	2	1	1
광주	5	-	1	1	1	1	1
대전	6	1	1	1	1	1	1
울산	5	1	-	1	1	1	1
경기	29	4	1	8	9	2	5
강원	5	1	-	1	1	1	1
충북	6	-	1	2	1	1	1
충남	7	1	-	2	1	2	1
전북	5	1	-	1	1	1	1
전남	5	1	-	1	1	1	1
경북	6	1	-	1	1	1	2
경남	5	1	-	1	1	1	1
제주	5	1	-	1	1	1	1

□ 경기도 청소년쉼터 현황표(2017. 10 기준)

지역	개소수	유형	비고
계	29	※일시 5개소, 단기 17개소, 중장기 7개소	‘17.10 개소예정
군포	1	중장기	남부(22개소)
부천	2	일시(고정형), 단기	“
성남	5	일시(고정형), 단기, 중장기	“
수원	2	단기	“
시흥	1	단기	“
안산	2	단기	“
안양	3	일시(고정형), 단기, 중장기	“
용인	2	단기, 중장기	“
평택	1	단기	“
화성	1	단기	“
이천	1	단기	“
오산	1	단기	“
의정부	3	일시(이동형), 단기	북부(7개소)
고양	2	단기, 중장기	“
구리	1	중장기	“
남양주	1	일시(고정형)	“

붙임 2
사전 입법영향분석표

입법영향 분석항목	세부항목	입법영향분석척도
1. 입법의 필요성	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
	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
	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? (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?)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
2. 적법성/중복성	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
	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<u>그렇지않다</u>
	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 ③ <u>해당없음</u>
3. 비용/의견수렴	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<u>그렇지않다</u>
	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
	조례제정시 입법예고,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
	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?	① <u>그렇다</u> ② 그렇지않다

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,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가출청소년”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,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,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.
4. “청소년쉼터”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하는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5. “청소년자립지원관”이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6. “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”란 경기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내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경기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·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, 청소년 쉼터의 설치·운영,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가출청소년의 보호·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도지사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·지원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
2. 가출청소년의 실태 조사 및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
3.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사업) ① 도지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 시설,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
2.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
3. 가출청소년 직업능력 개발,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
4.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
5. 가출청소년의 보호
6. 가출청소년의 교육문화·복지 지원
7. 가출청소년 야간생활지도 지원
8.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주거, 생활, 교육, 취업 등의 지원
9.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도지사

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청소년복지시설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청소년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 설치·운영) ① 도지사는 청소년 쉼터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(이하 “거점쉼터”라고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2.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

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2.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사업
3.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
4. 유관기관·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
5. 가출청소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적 건의
6. 그 밖에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·운영할 거점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9조(통합지원체계 활용)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·지원을 위하여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